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

발의연월일: 2024. 6. 4.

발 의 자:김예지·서천호·강대식

장동혁 • 곽규택 • 백종헌

김승수 · 임종득 · 한지아

김은혜 · 최형두 · 박대출

윤재옥 • 김장겸 • 김희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고발인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·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같이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고발인 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는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 여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 고발인을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245조의7제1항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5조의7제1항 중 "사람(고발인을 제외한다)"을 "사람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발인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24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고발인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5조의7(고소인 등의 이의신	제245조의7(고소인 등의 이의신
청)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	청) ①
받은 사람(고발인을 제외한다)	<u>사람</u>
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	
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	
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